#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32 발의연월일: 2021. 4. 13.

발 의 자:이해식·김경협·김영배

김원이 · 김철민 · 민형배

서영석 · 오영환 · 이용빈

이학영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20대 국회에서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「2단계 재정분 권 TF」를 구성하여 19차례 논의('19.9.6~'20.7.31.)했지만, 관계부처 간(기재부↔행안부), TF민간위원 간(기재부추천↔행안부추천) 의견대 립이 팽팽하게 지속되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음.

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그간 TF에서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시도지사協, 시장군수구청장 協 등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'절충된 TF대안'을 마련함.

이에 자치분권위원회 안을 기준으로 합의된 내용인 특정장소분 개별 소비세(레저세)지방이양, 국세교육세를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.

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434호) 및 「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43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징수법」"을 "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, 「개별소비세법」 및 「교통・에너지・환경세법」"으로 한다.

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1항 또는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(이하 이 장에서 "카 지노"라 한다)에서의 영업행위(이하 이 장에서 "영업행위"라 한다)
- 5. 다음 각 목의 장소(이하 이 장에서 "과세장소"라 한다)의 입장행위(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"입장행위"라 한다)
  - 가. 경륜장(장외매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·경정장 (장외매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
  - 나. 경마장(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
  - 다.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

라. 골프장

마. 카지노

- ② 「식품위생법」, 「관광진흥법」,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과세대상인 영업행 위로 본다.
- ③ 카지노의 경영자가 카지노 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한경우에는 그 영업행위를 카지노에서 한 것으로 본다.
- ④ 과세장소의 종류와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업행위 및 입장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제40조"를 "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"으로, "장외발매소"를 "장외매장 또는 장외발매소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카지노 또는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카지노 또는 과세장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42조(과세표준 및 세율)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 - 1. 경륜등: 승자투표권,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의 100분의 10
  - 2. 영업행위: 연간 총매출액(「관광진흥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 매출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에 따른 다음 표의 세율

연간 총매출액	세율
500억원 이하	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0
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	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2
1천억원 초과	10억원+(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100분의 4)

- 3. 입장행위: 입장인원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세율
  - 가. 경륜장·경정장: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. 다만, 장외매 장은 800원으로 한다.
  - 나. 경마장: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. 다만, 장외발매소는 2 천원으로 한다.
  - 다.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: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
  - 라. 골프장: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
  - 마. 카지노: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(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). 다만,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.
- ② 과세표준이 되는 총매출액 또는 인원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42조의2(입장행위의 면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세를 면제한

다.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가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
- 3. 외국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에 입 장하는 경우

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납세의무자는"을 "경륜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"으로, "제42조제1항에"를 "제42조제1항제1호에"로, "제42조제2항에"를 "같은 호에"로, "세액(이하 이 장에서 "산출세액"이라 한다)을"을 "세액을"로, "장외발매소의"를 "장외매장·장외발매소의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카지노의 경영자는 매년 카지노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,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, 총매출액, 총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영업행위를 한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카지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매 연도분의 레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매 분기 과세장소의 종류별 · 세율별로 입

장인원과 입장수입을 적은 신고서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매 분기분의 레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
-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또는 과세장소의 경영자가 카지노 또는 과세장소의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고 레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⑤ 카지노의 경영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레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⑥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(이하 제43조의2제3항에서 "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"라 한다)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(主事務所)에서 총괄하여 신고·납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·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때 각 카지노 또는 과세장소로 본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2(개업·폐업 등의 신고) ①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

- (장외매장·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, 카지노 또는 과세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.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신고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개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한다.
- ④ 경륜등 또는 카지노·과세장소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.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연명(連名)하여 신고하여야 한 다.
- ⑤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(이하 이 항에서 "합병법인"이라 한다)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(이하 이 항에서 "피합병법인"이라 한다)의 경륜등 또는 카지노·과세장소의 영업을 승계한 경우에 합병법인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합병법인은 의합병법인과 연명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개업·폐업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3조의3(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) 경륜장등 또는 카지노·과세 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경륜등 또는 카지노·과세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(包括承繼)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
제44조의 제목 중 "비치"를 "비치·기록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납세의무자는"을 "경륜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카지노 또는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두고 장부에 그 영업행위 또는 입장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제45조제1항 중 "산출세액"을 "제42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(이하 이 조에서 "산출세액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의2(수시부과)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포탈(逋脫)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,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.

제45조의3(의무의 승계) 경륜장등 또는 카지노·과세장소를 사실상 이

전하지 아니하고 경륜등 또는 카지노·과세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승계인은 피승계인(被承繼人)에게 속하였던 다음 각 호의의무를 승계한다.

- 1. 제43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, 세액의 납부 및 제45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의 의무
- 2. 제44조에 따른 장부 비치ㆍ기록의 의무
- 제45조의4(명령 사항)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레저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, 입장권 사용, 영수증 발행, 표지판의게시(揭示),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수 있다.
- 제45조의5(질문검사권) ① 세무공무원은 레저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과세대상에 관하여 질문 을 하거나 그 장부,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.
  -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,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.
- 제45조의6(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륜등 및 카지노·과세장소의 영업정지나 허

가취소를 그 영업의 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.

- 1. 경륜등 및 카지노·과세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
- 2. 경륜등, 영업행위 및 입장행위에 대한 레저세의 전부 또는 일부 를 3회 이상 신고·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카지노의 경영자가 제43조제5항에 따른 납세담보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
-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.

제150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. 「개별소비세법」에 따른 개별소비세(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 항제4호가목·나목·마목·사목·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 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납세의무자
- 9.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에 따른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의 납세의무자

제151조제1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. 「개별소비세법」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30(다만,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4호다목·라목·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)
- 9.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액의 100분의 15

제152조제1항 전단 중 "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"을 "담배소비세, 주민세 사업소분, 개별소비세 및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.

③ 개별소비세액 및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액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별소비세 및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의 부과·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·징수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# 3. 레저세

가. 경륜·경정·경마 및 「지방세법」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: 승자투표권,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

나. 영업행위: 카지노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

다. 입장행위: 과세장소에 입장하는 때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	
으면 <u>「지방세기본법」 및</u>	<u>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</u>
<u>「지방세징수법」</u> 에서 정하는	세징수법」, 「개별소비세법」
바에 따른다.	및 「교통・에너지・환경세법」
제40조(과세대상) (생 략)	제40조(과세대상) ① (현행 제목
	외의 부분과 같음)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4. 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1항
	또는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
	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
	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(이
	하 이 장에서 "카지노"라 한
	다)에서의 영업행위(이하 이
	장에서 "영업행위"라 한다)
<u>&lt;신 설&gt;</u>	5. 다음 각 목의 장소(이하 이
	장에서 "과세장소"라 한다)의
	입장행위(관련 설비 또는 용
	품의 이용을 포함한다. 이하
	이 장에서 "입장행위"라 한
	<u>다)</u>
	가. 경륜장(장외매장을 포함

<신 설>

<신 설>

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 다) · 경정장(장외매장을 포 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 다)

나. 경마장(장외발매소를 포 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 다)

다.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라. 골프장 마. 카지노

- ② 「식품위생법」, 「관광진흥 법」,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 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과세대 상인 영업행위로 본다.
- ③ 카지노의 경영자가 카지노 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 게 한 경우에는 그 영업행위를 카지노에서 한 것으로 본다.
- ④ 과세장소의 종류와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영업행위 및 입장행위의 판 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제41조(납세의무자) 제40조에 따 제41조(납세의무자) ① 제40조제1 른 과세대상(이하 이 장에서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"경륜등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과세대 상 사업장(이하 이 장에서 "경 륜장등"이라 한다)과 <u>장외발매</u> 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 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다.

#### <신 설>

- 제42조(과세표준 및 세율) ① 레 제42조(과세표준 및 세율) ① 레 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,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 로 한다.
  - ②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 0으로 한다.

	-
	-
	-
	-
<u>장외매장 또는 장외발매소</u>	-
	-

- ② 카지노 또는 과세장소의 경 영자는 카지노 또는 과세장소 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- 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 음 각 호와 같다.
- 1. 경륜등: 승자투표권, 승마투 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의 100 분의 10
- 2. 영업행위: 연간 총매출액 (「관광진흥법」 제30조제1 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 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에 따른 다음 표의 세율

<u>연간</u> 총매출액	<u>세율</u>
500억원	연간 총매출액의
<u>이하</u>	<u>100분의 0</u>
<u>500억원</u>	500억원을 초과하
<u>초과</u> 1천억원	는 금액의 100분
<u> 1선 구선</u> 이하	의 2
1천억원	10억원+(1천억원
<u>초</u> 과	을 초과하는 금액
<u> </u>	의 100분의 4)

- 3. 입장행위: 입장인원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세율
  - 가. 경륜장·경정장: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. 다 만,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.
  - <u>나. 경마장: 1명 1회 입장에</u> <u>대하여 1천원. 다만, 장외</u> <u>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.</u>
  - 다.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: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
  - 라. 골프장: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
  - <u>마. 카지노: 1명 1회 입장에</u> 대하여 5만원(「폐광지역

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 법」 제11조에 따라 허가 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 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). 다만,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 천원으로 한다.

② 과세표준이 되는 총매출액 또는 인원의 계산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2조의2(입장행위의 면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세 를 면제한다.

- 1.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
- 3. 외국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

제43조(신고 및 납부) 납세의무자 제43조(신고 및 납부) ① 경륜등 는 승자투표권, 승마투표권 등 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2조제1항에 따 른 과세표준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 액(이하 이 장에서 "산출세액" 이라 한다)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 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 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 별법」 제11조에 따라 허가 받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 우 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-----제42조제1항제1호에 -----같은 호에--장외매장·장외발매소의-----② 카지노의 경영자는 매년 카 지노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 금액,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, 총매출액, 총세액 등을 적은 신 고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 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 를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카

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 「폐

<신 설>

<신 설>

지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매 연도분의 레저세를 납부하 여야 한다.

- ③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매 분기 과세장소의 종류별·세율별로 입장인원과 입장수입을 적은 신고서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매 분기분의 레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또는 과세장소의 경영자가 카지노 또는 과세장소의 경영자가 카지노 또는 과세장소의 의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고 레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⑤ 카지노의 경영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 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레저세액에 상

<신 설>

<신 설>

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
⑥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구정에도 불구하고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(이하 제43조의2제3항에서 "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"라 한다)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(主事務所)에서 총괄하여 신고·납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·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카지노 또는 과세장소로 본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신고 및 납부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
제43조의2(개업ㆍ폐업 등의 신고)
①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(장외매장・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, 카지노 또는 과세장

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 나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도 또한 같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 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개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사 업자 단위로 신고하려면 사업 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 려는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 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경륜등 또는 카지노·과세 장소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 속으로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연명(連名)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- ⑤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합

제44조(장부 비치의 의무) <u>납세의</u> 제44조(장부 <u>비치·기록</u>의 의무) 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

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 병으로 설립된 법인(이하 이 항에서 "합병법인"이라 한다)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(이하 이 항에서 "피합병법인"이라 한다) <u>의 경륜등 또는</u> 카지노·과세 장소의 영업을 승계한 경우에 합병법인은 그 사실을 즉시 관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합병법 인은 피합병법인과 연명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 한 사항 외에 개업 · 폐업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제43조의3(폐업으로 보지 아니하 는 경우) 경륜장등 또는 카지 노 · 과세장소를 사실상 이전하 지 아니하고 경륜등 또는 카지 노 · 과세장소의 영업을 포괄승 계(包括承繼)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
① 경륜등에 해당하는 사업을

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<u>하는 자는</u> 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 ------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-------신고하여야 한다. ------

<신 설>

제45조(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 세) ① 납세의무자가 제4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「지방세기본 법」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 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

② (생 략) <신 설>

아는 사는
② 카지노 또는 과세장소의 경
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장소별로 장부를 갖
춰 두고 장부에 그 영업행위
또는 입장행위에 관한 사항을
기재하여야 한다.
제45조(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
세) ①
제42조에 따라
산출한 세액(이하 이 조에서
"산출세액"이라 한다)
② (현행과 같음)
제45조의2(수시부과) 납세의무자
가 레저세를 포탈(逋脫)할 우려
<u>가 있다고 인정되거나, 사업 부</u>

<신 설>

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제 43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.

제45조의3(의무의 승계) 경륜장등 또는 카지노·과세장소를 사실 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경륜등 또는 카지노·과세장소의 영업 을 포괄승계 하는 경우 승계인 은 피승계인(被承繼人)에게 속 하였던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승계한다.

- 제43조에 따른 과세표준의
   신고, 세액의 납부 및 제45조
   에 따른 가산세 납부의 의무
   제44조에 따른 장부 비치・
   기록의 의무
- 제45조의4(명령 사항) 관할 지방
  자치단체의 장은 레저세의 납
  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
 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 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세
  금계산서 발행, 입장권 사용,
  영수증 발행, 표지판의 게시(揭
  示),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

<신 설>

<u>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</u> 수 있다.

제45조의5(질문검사권) ① 세무공 무원은 레저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과세대상 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장부,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을 검사할 수 있다.

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 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 며,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 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45조의6(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륜등 및 카지노·과세 장소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그 영업의 허가관청에 요구할수 있다.

1. 경륜등 및 카지노·과세장소

제150조(납세의무자) 지방교육세 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7.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- 의 영업에 관하여 「지방세 기본법」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
- 2. 경륜등, 영업행위 및 입장행위 명 입장행의 기계 대한 레저세의 전부 또 그 일부를 3회 이상 신고·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카지노의 경영자가 제43조제5항에 따른 납세담보 요구를따르지 아니한 경우
-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허가 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를 하여야 한다.

제150조(납세의무자) 지방교육세 제150조(납세의무자) -----

-----

----

- 1. ~ 7. (현행과 같음)
- 8. 「개별소비세법」에 따른 개 별소비세(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4호가목・나 목・마목・사목・자목 및 같 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납세의무자
- 9.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

제151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지 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 다.

1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## ② ~ ④ (생 략)

<u>에 따른 교통·에너지·환경</u>
세의 납세의무자
제151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
<u>.</u>
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「개별소비세법」에 따라 납
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의
<u>100분의 30(다만, 「개별소비</u>
세법」 제1조제2항제4호다
목・라목・바목 및 아목의
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
<u>5)</u>
9. 「교통・에너지・환경세법」
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
통·에너지·환경세액의 100
<u>분의 15</u>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52조(신고 및 납부와 부과・
징수) ①
담배소비세, 주민세 사업소분,
개별소비세 및 교통・에너지・

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자(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에 한정한다)의 주사무소 소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 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<신 설>

③ (생략)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개별소비세액 및 교통·에 너지·환경세액에 부과되는 지 방교육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개별소비세 및 교통· 에너지·환경세의 부과·징수 의 예에 따라 부과·징수한다.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